

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2078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20년 12월 17일
제안자 : 보건복지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- 2020년 7월 13일 서윤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 1676호)에 대하여 제289회 정례회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(2020년 12월 17일)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,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, 그 내용을 조정한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 1676호)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조문의 용어 통일이 불가피한 바, 위원회 대안을 통해 수정하고자 함.

3. 대안의 주요내용

- “주부인터썬”을 “여성인터썬”으로 변경함.(안 제2조제3항, 안 제6조제5호)
- “일과 삶의 균형”을 “일·생활 균형”으로 변경함.(안 제6조제6호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주부인턴쉽”을 “여성인턴쉽”으로 한다.

제6조제5호 중 “주부인턴쉽”을 “여성인턴쉽”으로 하고, 같은 조제6호 중 “일과 삶의 균형”을 “일·생활 균형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2. (생 략)</p> <p>3. “<u>주부인턴쉽 프로그램</u>”이란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현장 적응력과 자신감을 갖도록 하기 위한 직장체험 활동을 말한다.</p> <p>4. (생 략)</p> <p>제6조(경제활동촉진사업)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</p> <p>1. ~ 4. (생 략)</p> <p>5. <u>주부인턴쉽 프로그램 운영</u></p> <p>6. <u>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와 환경조성</u></p> <p>7. (생 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<u>여성인턴쉽</u> ----- ----- ----- -.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경제활동촉진사업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여성인턴쉽</u> -----</p> <p>6. <u>일 · 생활 균형</u>----- -----</p> <p>7. (현행과 같음)</p>